

원산지표시 방법

- 녹용 및 양록산물 원산지 표시 필수, 적발시 과태료 부과 -

녹용 및 양록산물도 여타 농산물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및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전지 녹용의 경우 잘 떨어지지 않는 재질로 원산지 및 생산 농장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절편녹용의 경우 녹용케이스에 원산지 및 유통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녹용케이스의 경우 케이스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사용,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원산지 표시 스티커는 본회가 제작, 일련번호를 명시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전지 녹용의 경우에는 동그랗게 말아서, 녹용 케이스의 경우 케이스 앞면 혹은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고발자에게는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위반시의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원산지표시 방법

가.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1) 포장판매 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 50cm²이상 : 12Point(18급) 이상

2) 포장 표면적 50cm²미만 : 8Point(12급) 이상. 다만 8포인트(2.9mm)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포장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과 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

표시 방법	규격
스티커 부착(현품)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표시	가로 10cm×세로 5cm 이상
꽃말표시	가로 10cm×세로 5cm 이상×높이 5cm 이상
안내표시판(판매장소)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세로 5cm 이상

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을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1) 포장 표면적 50㎢ 이상 : 12Point(18급) 이상

2) 포장 표면적 50㎢ 미만 : 8Point(12급) 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1) 포장된 가공품

(가)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

표시 방법	규격
스티커 부착(현품)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표시	가로 10cm×세로 5cm 이상
포말표시	가로 10cm×세로 5cm 이상×높이 5cm 이상
안내표시판(판매장소)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미국산 콩 100%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된장과 중국에서 생산한 고추장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가공한 혼합장의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 원산지 : 된장(콩미국), 고추장(중국)

(3)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과 “국산원료의 혼합비율”, 수입원료 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 등”과 “수입원료의 혼합비율”로 표시

(예) 참기름 (참깨 : 국산 60%, 중국 등 40%)

(나)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과 “그 혼합비율”, 2번째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 등”과 “나머지 혼합비율”로 표시
(예) 참기름 (참깨 : 중국 60%, 수단 등 40%)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 「원산지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의 증감범위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2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의 처벌규정

가. 법적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과태료)
-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74호 : '2000.11.20)

나. 과태료

(1) 농산물

- 부과대상 :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 부과기준 :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 미표시 경우 :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의 국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

- 표시방법 위반 경우 :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1/2을 부과

(2) 농산가공품

- 부과대상 : 원산지표시 대상 가공품에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공업자 및 판매자
 -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에 당해 품목의 1년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기준액(연간매출액)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이상위반
~ 1억원 미만	30	6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0	100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100	200
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200	400
6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300	600
8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00	800

-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농산물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3) 조사거부·기피·방해 행위

- 부과대상 : 원산지표시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과기준 : 1회 500만원다. 고발 또는 형사입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위장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한 자 **민국양특**